

민사소송의 상식

김상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1.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되도록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살이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양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과 무슨 문제가 얹히기라도 하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묻고 한걸음 물러서서 서로가 편안하고 조용하게 수습하려고 하게 된다. 그래도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소송을 원할 경우나 무리한 요구, 억지주장을 할 경우에는 소송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소송관계서류가 배달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사건의 핵심보다도 소송 자체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내가 소송을 걸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2. 민사소송의 상식

· 법으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

사람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말로, 힘으로, 주먹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간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인 것이다.

·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관계이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 즉 소송을 걸어온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형사소송에서 서로 원고, 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피고라는 호칭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라는 뜻 이상의 의미는 없으므로 피고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원고나 피고는 개인, 법인, 임의단체 누구나 될수 있다. 단,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부능력자는 꼭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사건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금액이 3천만원을 넘게 되면 판사가 3명인 재판부가 관할하고 그보다 작은 금액은 판사 1명인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그런데 소송가액이 3천만원이 넘더라고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어음금과 수표청구사건은 모두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 소송은 서류(소장)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청구하는 서류, 즉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해 주는 것이 좋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하는 목적과 결론을 요약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이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재판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원인은 앞의 청구취지를 말하는 원인인 바.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원고는 지난 94년 5월 1일 피고에게 돈 2천만원을 구어주었고 피고는 그것을 96년 5월 1일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이다.

-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른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금액의 1천분의 5(0.5%)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금액이 20만원을 넘게 되면 인지를 사서 붙이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법원의 지정은행에 인지대를 현금으로 내고 확인서나 확인스탬프를 받게 하고 있다.

송달료는 소송관련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비용으로 소장제출시 꼭 납부해야 한다. 송달료는 소송상대방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가 1명인 경우라면 소액사건에서는 17,600원(1회분 1,760×5 회분×2인 원고와 피고)이 되고 단독사건에서는 28,160원, 합의사건에서는 35,2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소장의 부분을 피고의 숫자만큼 더 만들어 제출도록 하고 있다.

3. 민사소송의 진행

- 당사자에 대한 통지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이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보내주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소송의 내용을 미

리 알려 주게 된다.

- 변론기일 지정과 소환

그리고 곧 원고와 피고가 자기주장을 하고 시비곡절을 가리도록 날자를 정하는데 이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한다. 변론기일은 대개 사건의 접수순서에 따라 일정을 맞추어 결정하게 되고 결정되는대로 원고와 피고를 부르게 된다.(소환) 변론기일은 법원의 업무 협편과 사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주장과 답변

변론기일에 법원에 나가면 먼저 원고측에서 주장하고 피고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원고가 먼저 “돈 이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는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자백)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인정이나 부인을 하지 않으면(침묵) 인정(자백)한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부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있으나 지난해 가을에 갚았습니다.”라고 하거나 “그 빚은 원고가 가져간 수박판매대금으로 맞계산(상계)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서로 다른 주장이나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주장을 항변이라고 하는데 항변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원고측이 자백이나 부인같은 답변을 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을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나 답변, 항변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말로써 주고 받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의 성격이나 형편에 따라 서류로만 들어 제출할 수도 있다. 이 서류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라고 하는데 사건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여유모로 편리하다. 그리고 주장사항이나 항변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주장 또는 항변한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대개 차용증 같은 서류, 증인신문결과, 검증, 감정, 본인심문 등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중 어느 한 쪽이 소환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의 주장을 인정하는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 형편상 출석이 어려울 경우라면 준비서면이라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당사자 양측 이 모두 2번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않고 그뒤로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쌍불취하)

4. 소송의 종료

· 판결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을 충분히 듣고 진실을 밝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은 보통 변론종결후 2주 일쯤 뒤에 선고하게 된다.

· 소의 취하

판결확정 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그런데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였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판결이나 취하라는 형식말고 도 소송 도주에 당사자간 화해나 청구포기, 조정 등에 의해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5. 항소와 상고

항소는 1심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그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심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이때 인지대는 1심의 2배인 1천분의 10을 내야 한다. 항소심 판결

에 불복일 경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판결송달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상고 할 수 있다. 상고장에는 1심의 3배금액에 이르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6. 주의할 일

옛말에 “송사많은 집과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즉 주변사람들의 인심을 읽는 일이고 송사에 몰두하다보면 생업이 소홀해 질뿐아니라 송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정력이 만만치 않아 집안살림이 기울게 될 것이다 때문이다 따라서 송사는 가능한 한 깊이 생각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하고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지위나 실력, 성품, 재력 등을 보아 물러서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을 지키는 것은 곧 법의 목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임이지만 법의 수단은 투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을 꼭 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나 상대가 소송을 걸어왔다면 즉시 가까운 농협에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면 된다. 유능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성실히 수행해 주는데 소송에 꼭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까지도 모두 대신내주어 농가에는 아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법률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아직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세계 최초의 법률복지 제도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라도 남원, 흥부전의 무대인 이곳은 경치좋고 인심이 넉넉해 모두 흥부처럼 순하게만 살아온 곳이다. 박씨, 조씨, 김씨, 이씨 네사람의 흥부가 시설채소 재배를 계획하고 전주에 있는 건축회사에 공사를 맡긴것이 지난 95년 봄이었단다.

두달이면 완공된다고 해서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합쳐

1억6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미리 넉넉하게 주어버린 흥부님들은 완공이 담초 약속보다 석달이나 늦은 것도 탓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만 지어보려 했다는데, 마침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완전히 날립공사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붕의 환기창이 움직이지 않고 비닐커튼은 이곳저곳 찢어지는 데다 부직포마저 제대로 덮어지지 않는 등 흡집